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1. 3 선고 2021나500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1. 3 선고 2021나50004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53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변론 종결 2021. 10. 13.

판결 선고 2021. 11. 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532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17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돈 중 3,576,7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1) 2018. 2. 8.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82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A는 원고에게 82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3항 기재 돈 중 49,317,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공사 진행과 경매절차 개시

- 1) C는 2007. 10. 9. 충주시 E 공장용지 6,126.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 5개동[주2동, 부3동(756.49m²)]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 2) C는 그 무렵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H, I, J동 건물'과 같이 특정한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8. 4. 12.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의 기초공사와 철근배근을 완료하였다.
- 3) C는 2010. 10. 2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1. 4. 11. 다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4) C의 채권자들은 2015. 11.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6. 7. 11. 청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8296호로 C와 D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5.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397,678원 및 그 중 872,200,327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지급명령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13. 확정되었다.

다. C와 피고 A 사이의 약정

C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8. 2. 8. 피고 A(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와 건축이 중단된 상태의 이 사건 각 건물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서 및 확인서(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C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다가 중단된 위 건물 3개동[사무동 1개동(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39m²), 공장 2개동(구조: 일반철골구조, 면적: 2,016m²)] 등에 대하여 1억 원에 피고 A에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1,000만 원은 2018. 2. 8. 계약 시 지급하고,
- 중도금 : 7,000만 원은 2018. 7. 4. 지급하고,
- 잔금 : 2,000만 원은 2018. 7. 20. 지급한다.

2. 아래(첨부 확인서, 갑 제5호증)와 같이 유치권 발생 시 및 K와 발생한 건축설계 및 감리와 관련된 비용 일체는 C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가. 유치권에 대하여, C 명의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다가 중단된 위 건물 3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권 주장이 없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후 유치권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나. 건축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K와 사이에 발생한 건축설계 및 감리와 관련된 비용일체에 대하여 C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완공과 근저당권의 설정

- 1) 피고 A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8. 5. 1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L조합에 채권최고액 67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2)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로는, 2018. 2. 19. C에서 C와 피고 A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피고 A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8. 5. 24.에는 피고 A의 단독명의로 다시 변경되었다.
- 3) 피고 A는 2018. 6. 18.경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8. 7. 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L조합에 위 저당권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고, 채권최고액을 1,878,000,000원으로 변경해 주었다.
- 4) 피고 A는 2018. 8.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M, N(중복)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O은 2021. 4. 29.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들을 경락받았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49,317,6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배당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9, 12, 14, 21, 2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재산상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각 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초사실과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845,415,6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2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C는 그 피담보채무(임의경매절차의 배당표에 기재된 액수가 3,652,694,179원이다)와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등 가)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로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2018. 2. 8. 피고 A에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이라 할 수 있는 당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은 채무자인 C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A와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가) 피고들은, '2018. 2. 8.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경매 중이었는데,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문제되고 있어 매각가가 크게 하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위를 양수한 P유한회사이다)의 중개로 피고 A가 C에 1억 원을 제공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감정가액의 80% 이상으로 응찰하면 위 근저당권자가 건물 부분(법정지상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채무자인 C의 전체 재산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약 10년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고 철거의 대상일 뿐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사실상 채무자 C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②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행위로 보일 뿐이다. 위 근저당권자의 경우 토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책임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위 근저당권자는 담보의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일반채권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다액의 변제를 받게 한 것은 오히려 특정 일반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③ 또한 위 주장 중에는 이 사건 약정의 양도대금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측에서 작성해 준 확인서(을 제5호증의 1)에도 '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정보에도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C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유치권이 실제 행사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C가 수령한 1억 원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는 오랜 기간 중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과 건축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각 건물과 그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 권리의 재산적 가치가 책임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 가액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2)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

(가) 피고 A의 경우

피고 A는 앞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는 C가 채무초과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온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경우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고,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Q을 통해 피고 A에 2017. 8. 3.경 1억 5,000만 원을, 2018. 6. 22.경 1억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대여시점은 피고 A가 이 사건 약정을 추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기간에 해당한다. 피고 B는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20. 1. 9.자 준비서면을 통해 'Q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Q이 그럴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여 Q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A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반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피고 A가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이 828,200,000원임은 전제로 위 금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약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8, 19, 2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R건축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양도목적물(건축주명의)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은 17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가액을 828,2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갑 제13호증)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위 감정평가결과에서는 2016. 7. 16. 기준 이 사건 H, I동 건물의 가액을 각 327,600,000원으로, 이 사건 J동 건물의 가액을 173,000,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있다. 그 감정평가서(갑 제13호증)에는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 정도와 위치, 용도, 면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위 감정평가 당시에 이 사건 각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지 약 9년이 경과한 상태였고, 건축이 중단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H, I동 각 건물은 철골 뼈대만 완성된 상태로 지붕슬래브배근 등 지붕이나 벽체 등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는바,3)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0. 10. 25. 당시 같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고, 철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 A가 건축주명의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였고, 2020. 3. 19. 기준 감정평가액이 1,361,696,96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이 사건 약정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사건 H, I동 건물의 교환가치가 각 327,600,000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할 근거나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위 감정평가액 각 327,600,000원이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J동 건물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콘크리트 벽체와 골조 등이 대략적으로 완성된 상태였는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그 활용가치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상으로 건축이 중단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0. 10. 25.보다 앞선 시점일 가능성이 높은바, 경매 이후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J동 건물 부분 감정평가액 173,000,000원은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들이 얻은 이익에 관하여 본다. 피고 A가 얻은 이익은 앞서 인정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인 173,000,000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된 후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B는 49,317,644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배당금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사건 토지 부분, 이 사건 약정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가치가 상승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중에서 앞서 인정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이 차지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3. 19. 기준 완공된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은 1,361,696,960원 상당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023,695,600원임을 알 수 있다. 피고 B가 받은 위 배당금에서 위 공동담보가액이 차지하는 부분을 계산하면 3,576,749원[= 49,317,644원 × 173,000,000원/(1,361,696,960원 + 1,023,695,600원),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B가 얻은 이익은 3,576,749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이 얻은 각 이익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이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액수는 A가 173,000,000원, 피고 B가 3,576,749원이고, 이들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마) 피고들은 원고 외에도 채무자 C의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있는데 채권액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위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약정은 17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A는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전득자인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576,7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취소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원익선

판사권노을

판사김지건

별지

- 1) 원고는 소장 등에서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 후 완공된 건물(위 계약 이후 건축허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다)을 표시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 2) 건축이 중단된 시점은 제출된 증거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감리보고서는 2008. 4. 14.자와 2008. 5. 11.자가 제출되어 있는데, 보고인이 C가 아닌 'G(주)'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자인 R건축사무소에서는 이를 관행상 작성한 것이며, 2018. 2.경 이 사건 각 건물은 갑 제13호증(감정평가서) 상의 사진과 같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 3) 원고는 감리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 5.경 이미 지붕슬래브배근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피고 A가 공사를 한 부분은 벽체 판넬과 마무리 공정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감리보고서의 작성자가 피고 A로 기재된 점 비추어 볼 때 위 감리보고서가 위 일자에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의 사실조회결과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